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학역 편집인 최경환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프로경찰

前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안재경

최근 중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와 의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이기수

영국의 학교안전협력(SSP) 프로그램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유지웅

연구특집

깨진창문경찰활동이 범죄해결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현석

4대 사회악 근절활동과 체감안전도 연계성 강화방안

서울지방경찰청 4대약TF 경정 임만석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교수 윤경희

치안현장탐구

감히 경찰의 이름을 내걸고
로스쿨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경찰대학 로스쿨지원팀 경정 이관희

치안정책동향

영국 맨체스터의 디자인을 이용한 범죄예방 전략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이명원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프로경찰



前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안 재 경

우리는 각종 운동경기를 통해 프로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그들의 멋진 플레이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실수에 대하여는 서슴없이 비난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일수록 작은 실수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더할 수 없이 가혹하다.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들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나은 경기를 하기 위해 부단히 기술을 연마하고 반복적·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 나간다.

범인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분야에서 경찰은 프로다. 중요한 경기에서 프로선수들의 작은 실수가 관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선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듯 우리 경찰도 프로선수들과 같은 운명이다.

얼마 전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의 추적과정과 사체처리에 있어서 우리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고, 몇 년 전 수원의 오원춘 사건의 처리과정을 두고 국민들로부터 적잖은 비난을 받았으며 우리 경찰의 업무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프로선수들의 그 것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 인력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하고 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근본적으로 프로경찰관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경기의 룰에 해박하다고 해서 프로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을 잘 다

루는 사람이 프로선수이다. 공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꾸준히 기량을 쌓아나갈 때 우수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다.

거리를 순찰하고 수사를 하고 경비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모든 경찰활동은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프로경찰로서 활동을 다할 수 없다. 경기의 룰에만 해박하다고 해서 프로선수라고 할 수 없듯이 순찰 매뉴얼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법조문에 해박하다고 해서 결코 프로경찰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경찰활동에서 접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훈련과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갈 때 진정한 프로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간혹 선진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나 행동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깊고 넓게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경찰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그리고 각종 법조문의 해석이나 수사서류 작성 등이었다. 프로 선수가 공을 다루는 연습보다는 경기 룰 익히

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경찰의 주요업무인 수사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핵심은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포한 범인을 상대로 범행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의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증거수집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날 증거수집은 많은 경우 과학의 힘을 빌리고 있다. 특히, 우리 경찰의 IT기기의 분석기법이나 DNA채취와 분석기법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물론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행을 감안할 때 더욱 첨단화된 과학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혈흔비산분석이나 걸음걸이 분석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일부 일선 수사관과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음은 특정된 범인의 행적을 찾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CCTV나 휴대전화 등의 과학의 힘도 필요하지만 도주하는 범인의 행태나 혹시 범인을 우연히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CTV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과 추적기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범인의 행태 연구나 목격자 진술의 확보 등에 대하여는 연구된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체포된 범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첩경이다. 이를 위해 거짓말탐지기나 법최면 등이 과학수사요원들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현장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을 하면서 범인의 표정이나 행동양식을 통해서 반응하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반응의 연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신문대응법에 대하여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지는 신문 외에는 대부분 진술당사자의 어깨까지 올라오는 책상 가림막으로 가리고 컴퓨터모니터를 진술당사자의 얼굴 앞에 설치하여 그 표정이나 행동을 수사관이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문 시 진술당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관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문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비단 수사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뿐 아니라 우리 경찰의 주요업무인 순찰이나 경비 분야에 있어서도 법적인 연구 외에 우리 경찰관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언행이나 경찰관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인식에 대한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매뉴얼이나 규정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들이 프로경찰로서 인정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민의 신뢰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프로경찰을 지향한다면 이러한 경찰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찰에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있고 열정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러한 성과가 교육으로 연결되면 경찰활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진정한 프로경찰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PSI**

최근 중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와 의의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경정 이 기 수

최근 중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형사처벌 판결

2012년 말 중국 베이징시 당국은 ‘쓰루왕(思路网)’의 영상물 대량 불법복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2013년 4월 24일 조사를 마친 베이징시 당국은 마침내 공안국과 협조해 운영자인 조우쯔취엔(周志全) 총재 등 7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저작권침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년 5월 15일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최초의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법원의 유무죄 인정 여부, 형량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중국법원은 불법 온라인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인 ‘쓰루왕(思路网)’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운영자인 조우쯔취엔(周志全) 총재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벌금 100만 위안(약 1억7천만원 상당)을 선고하고 공범들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도 중형을 선고하였다.

‘쓰루왕(思路网)’은 2004년 설립된 중국최대 고화질 동영상 포털이며, 고화질 불법복제물 상영 사이트로도 유명하다. 주로 정품 영상을 무단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시 비용을 지불하게 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뿐만 아니라 블루레이 화질의 영화, 각종 동영상과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 유통하였다. 중국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고화질의 해적판 영화는 대부분 쓰루왕(思路网)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쓰루왕(思路网)’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중구조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등급별료 월 사용료, 연회비 등을 받아 수익을 챙겼다.

그뿐 아니라 ‘쓰루왕(思路网)’은 온라인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였는데 온라인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을 복제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고화질 동영상 플레이어, 홈시어터, 영화음악 설비 등에 저장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음란물도 제공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제공하였다.

‘쓰루왕(思路网)’ 사이트 이용자들은 중국, 영국, 일본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트의 회원수는 140여만 명에 달하는데 동시접속 사용자수는 하루에 2만 명에 이른다. 또한 다른 웹 사이트에서도 아주 용이하게 쓰루왕의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의 특성상 사용자가 이메일 혹은 링크 등 방식으로 동 웹 사이트의 저작물을 신속히 전파할 수도 있다.

적발된 권리침해 저작물은 모두 22,296건인데 영화가 18,722편, 음악은 3,316개 앨범, 게임 소프트웨어는 208개가 있다. ‘쓰루왕(思路网)’은 연간 광고소득만 200~300만 위안(한화 약 3억5천~5억5천만 원 상당)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한국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법이 아닌 저작권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집중형 입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중국형법은 제217조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이하에 열거한 저작권침해행위를 범하고 그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과한다. 또한 위법소득이 매우 크거나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이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소득 액수나 정상(情狀)의 엄중 여부’는 최고인민법원의 법률해석에 따르게 된다. 이 해석의 명칭은 《불법 출판물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용 약간 문제의 해석》(關於審理非法出版物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이다. 이 해석이 제시한 기준은 ‘개인 위법소득 5만 위안 이상, 회사 위법소득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는 ‘위법소득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하게 된다. 그에 비해 ‘개인 위법소득이 20만 위안 이상 또는 회사의 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의 경우는 ‘위법소득이 매우 크다’고 보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량은 최고형이 5년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위법소득이나 범죄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 위법소득이 매우 크거나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징역형도 한국보다 장기이고,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병과하도록 해 한국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쓰루왕(思路网)’의 운영자에게 선고된 징역 5년, 벌금 100위안은 한국에서 최고형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권리침해 작품을 복제하여 전파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권리침해 발생 비율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평가된다. 형사처벌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저작권 침해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정부가 최근 2년간 특별단속의 방식으로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활발히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이러한 행정조치는 어느 정도 침해율 감소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만 예방과 억제 효과 면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은 ‘쓰루왕(思路网)’의 행위가 전 사회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으로서 중국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형사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에 따라 향후 중국 내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쓰루왕(思路网)’판결은 중국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환영받는 조치이며, 저작권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SI

영국의 학교안전협력(SSP) 프로그램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유 지 응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서도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이들 국가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그것이 청소년 일탈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행위이고, 교사의 훈육뿐만 아니라, 경찰,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이 연계 협력하는 학교경찰관 제도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국의 '학교안전협력' (SSP) 프로그램

영국정부는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정부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영국 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들은 학교에 기반을 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 2002년 영국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대책으로 학교안전협력 프로그램(Safer School Partnership programme: SSP)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 우범지역에 소재한 100여개의 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Safer School Police Officer)을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역 공동체의 응집력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시민

의식을 제고시키며, 청소년의 가족뿐 아니라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얻으면서, 2006년 이후 영국정부의 공식적인 학교경찰 프로그램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국의 학교안전경찰관 현황

영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는 모두 450개 이상의 학교 안전협력(Safer School Partnership) 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5천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영국 전체 학교의 1/4에 해당한다. 영국의 43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29개 경찰청에서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대개 학교 내 사무실이나 시설들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경찰이 지역 내의 한 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학교안전협력 팀에는 학교에 배치된 정규 경찰관 외에도 PCSO(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라고 불리는 민간인 경찰직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제복을 착용하지만 공권력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학교에서 전일 근무(full-time) 형태로 일하기도 하고 시간제 근무(part-time) 형태로 일하기도 한다. 해당 지역의 상황과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학교안전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

한 재정은 초기에는 주로 경찰에서 감당했으나, 최근에는 학교와 경찰의 재정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재정은 학교와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로부터도 제공된다.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경찰관의 공식적 지휘체계 하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협력하는 학교의 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고 있다. 지휘권의 배분은 학교 안전 경찰관과 학교의 연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다.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역할

1)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법 집행 활동

영국 학교경찰관은 학교 안팎에서 법 집행자로서의 활동하고 있다. 법 집행 활동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저지른 범죄나 범죄 피해를 조사하는 경찰활동 외에도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범죄 예방활동을 포함한다.

학교공간이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교 경찰관의 역할이다. 학교 경찰관은 학교 복도와 범죄 취약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학교 구내 침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처리하며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한다.

학교 경찰관은 학생들을 훈육하고 선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반사회적 행동, 학교폭력, 학대, 괴롭힘 등의 사건들에 대응하는 일은 학교 경찰관의 주요 역할이다. 더 나아가서 학교 경찰관은 무단결석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무단결석하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 나서거나 교사들이 무단결석하는 학생들을 다루는 것을 지원한다.

2) 교육 및 상담 지원 활동

영국의 학교 경찰관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시민의식, 도로 안전, 약물오용 등과 같은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영국 학교 경찰관이 수행하는 학교 내 교육활동에는 단지 학교 수업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 밖에서 소방에 관한 주제로 한 강연활동이나 청소년들의 레저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

학교 경찰관의 상담활동은 범죄나 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개별적으로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고 학생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3) 다기관 협력적 범죄예방 활동

영국의 학교 경찰관은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서 다기관 협력관계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 공공기관들과 더불어 상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연계 협력한다. 학교 경찰관 자신이 활동하는 학교와 다른 외부 기관들을 연계시키는 활동도 학교 경찰관의 주요 역할이다. 범죄나 범죄피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에 연계시켜 준다.

맺는말

영국의 학교안전협력 프로그램의 장점은 학교 안전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학교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서만 활동하는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지역 경찰활동에 통합되어 이뤄지고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활동이 가능한 시스템 하에서 영국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SI](#)

깨진창문경찰활동이 범죄해결율에 미치는 영향¹⁾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 현 석

서론

1982년에 미국의 저명한 경찰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우리나라의 월간 정치잡지에 해당하는 월간애틀랜틱(Atlantic Monthly)에 “깨진창문”이라는 제목의 범죄대책에 관한 정책제안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깨진창문이론이 제시되었는데, 깨진창문이론은 지역사회에서 사소한 물리적·행위적 무질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면 이것이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절히 제재하지 않으면 이것이 신호가 되어 더 중대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악순환을 가져와서 평온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고 범죄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오게 되어 점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깨진창문이론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지는 연구결과가 상충되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뉴욕경찰이 컴스탯(Compstat)을 실시하면서 깨진창문경찰활동²⁾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서 수많은 미국 경찰서들이 범죄억제 전략

으로 깨진창문경찰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깨진창문경찰활동이 범죄해결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뉴욕경찰에서 컴스탯을 설계한 잭 메이플(Jack Maple)은 그의 책에서 무임승차나 불법낙서 등 무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깨진창문경찰활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경찰이 접촉하게 되고 특히나 무질서로 체포된 사람들은 더 중대한 법도 위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깨진창문경찰활동을 하다보면 기소중지자들이나 현재 경찰이 추적중인 사람들을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경찰활동에 아주 중요한 정책적 제안을 주는 것이므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깨진창문경찰활동을 실시하면 범죄해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인구가 75,000명 이상인 35개 도시의 경찰서로부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발생과 체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종속변수는 강도해결률, 상해해결률, 주거침입절도해결률, 단순절도해결률, 자동차절도해결률, 전체폭력범죄해결률, 전체재산범죄해결률로, 그리고 전체범죄해결률이었다. 핵심 독립변수인 깨진창문경찰활동은 UCR Part II 체포건수 중에서 구결, 무질서, 공공장소주취, 마약 등의 행위로 체포된 사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경찰의 체포건수 중에서 깨진창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체포된

1) 장현석·Larry Hoover·Brian Lawton (2008).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권 1호에 게재되었음.

2) 깨진창문경찰활동은 무질서행위, 구결, 매춘, 마약거래, 무임승차 등 경범죄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경찰전략이다. 이를 통하여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사건의 비중이 높다면 개선창문경찰활동이 강하게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통제변수로서 범죄해결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경찰관수, 경찰관1인당 담당사건수, 흑인인구 비율, 13세에서 24세 젊은남성비율, 실업률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자료가 패널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여타 통계분석의 가정들을 고려하여 위계 다중선형모형(Hierarchical Multivariate Linear Modeling, HMLM)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강도해결율, 상해해결율, 그리고 전체폭력사건해결율에는 개선창문경찰활동이 사건해결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재산범죄해결율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범죄 중에서 주거침입절도해결율과 자동차절도해결율에는 개선창문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범죄해결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컨대, 개선창문경찰활동을 통해 무질서행위 위반자들을 체포하면서 범죄 기록을 조사하여 여죄를 발견하고 또한 체포된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포한 후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잠재적 범죄자들의 지문³⁾이 많이 확보되어 재산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 대조를 통하여 검거가 더 많아 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주거침입절도와 차량절도의 경우 폭력범죄들과 달리 피해자가 목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선창문경찰활동을 강화한 경찰서에서는 해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민등록증을 발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국민에 대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비교적 경미한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했을 때 비록 주거침입절도와 차량절도 해결율에 국한되긴 했지만, 경찰의 범죄해결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 개선창문이론을 바탕으로 경미하지만 범위반 행위에 경찰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필자가 느끼는 점은 우리경찰이 질서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위반 단속을 예전에 비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중요한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강력히 단속을 하지만, 무질서행위,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행위에 대한 단속은 CCTV에게 맡기고 현장에서 경찰이 위반자를 정지시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시민들은 경찰관이 있어도 대부분 단속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고 운전자는 CCTV가 없으면 신호위반을 한다. 심지어는 한산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출발하라고 난리다. 즉 교통법규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지도, 그리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차량을 정지시켜서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예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찰이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잠재적인 범법자들에게 이 지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CCTV에 대부분 넘겨버린 경찰의 법집행(단속) 임무를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눈에 보이게끔

하도록 장려해야한다.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조셉시 경찰서장 크리스 코널리⁴⁾와 대화를 하면서 경찰의 단속이 범죄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경찰의 순찰, 불심검문, 그리고 (경미한)법위반 단속은 범죄예방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CCTV에 넘길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사소한 법위반자에 대한 정지와 질문 또는 적극적인 단속은 이 지역이 경찰관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지역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한다. 필자도 만약에 경찰관이 필자의 집 앞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며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단속해 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아이들 그리고 내 가족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속을 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를 내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단속을 위한 단속, 또는 할당제 단속은 지양해야겠지만,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회복, 교통사고예방,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법집행은 경찰의 고유 임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할 것이다. **PSI**



4) 필자가 미주리웨스턴주립대 형사사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세인트조셉시 경찰서장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경찰관 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 사회악 근절활동과 체감안전도 연계성 강화방안



서울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TF팀장 경정 임만석

4대 사회악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지칭한다. '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최일선에 경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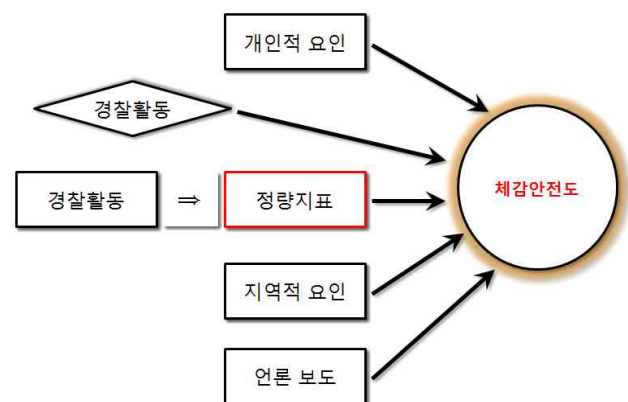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성폭력 미검률·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의 4대악 분야별 정량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회의 바로미터인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안전도의 향상은 더디기만 하다. 이처럼 경찰의 4대악 근절활동으로 인하여 4대악 분야별 정량지표는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성과 지표인 체감안전도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 즉 객관적 정량지표와 주관적 체감안전도의 불일치 현상은 양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객관적 성과지표인 4대악 분야별 정량지표와 주관적 지표인 체감안전도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원인을 탐구해 보면 정량지표는 주로 경찰의 4대악 근절활동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하는데 반하여,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크게 개인적 요인, 지역적 요인, 언론의 보도태도, 공식적 방어기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범죄피해경험과 신체적·사회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신체적 취약성이란 여성·노인처럼 힘이 부족하여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저항력이 저하된 경우를 말하고, 사회적 취약성이란 경제적·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 대응 능력의 취약함을 말한다. 지역적 요인으로는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정도와 지역사회의 통합정도가 있다. 황폐화 된 건물이나 주택들, 낙서, 방치된 쓰레기 등 물리적으로 무질서 하거나 청소년의 거리배회, 야간 소란, 음주 행위, 매춘 행위 등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경우는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의 통합력이 약하면 범죄에 대한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그만큼 범죄두려움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 외, 범죄에 대한 자극적 보도 등 언론보도 태도와 경찰 등 공식적 범죄 예방기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처럼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러한 연구결과는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찰활동이 4대악 분야별 정량지표 개선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4대악 근절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4대악 분야별 정량지표 향상을 위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다른 민생치안활동의 유기적 연계와 4대악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생변수들을 타깃으로 한 전략적 경찰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지는 필수적이다.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 경찰활동 외에 지역사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해소나 사회적 약자 보호는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인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노인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자체 방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지역이나 여성 귀갓길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역적 요인과 관련하여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물리적 무질서 해소를 위하여 관리되지 않고 불결한 범죄 다발장소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특히 범죄 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무질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동이 필요하다. 가령, 공원 등에 야간에 밀집하여 소란행위를 일삼는 비행청소년 집단은 주변 주민이나 행인에게 범죄 두려움을 크게 증가시

킨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의 보도태도도 체감안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흥미 위주보다는 공익적 보도태도가 필요할 것이며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언론대응이 관련 사실이 기사화 될 때 시민의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전략적으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 등 우리 사회의 공식적 범죄방어기제의 효율성과 가시성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활동의 가시성은 인력 증원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기존 경찰인력 운영의 방법을 개선함으로써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찰인력 확보를 통한 경찰활동의 가시성 증대가 바람직하지만 이는 예산의 제약 등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정밀한 범죄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 밀집지(hot spot)와 밀집시간대(hot time)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이들이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순찰활동을 한다면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며 그와 더불어 체감안전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PSI**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교수 윤 경 희

서론

최근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치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8년 2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치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의 중요성은 점증하였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제외되어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형식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패널 구성과 1, 2, 3차 델파이 응답 패널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정된 패널 및 델파이 응답 패널 구성

구분	선정된 패널		1차 응답		2차 응답		3차 응답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학계	7	31	6	30	5	29	5	31
시민단체	4	17	4	20	4	24	3	19
현장 실무자	12	52	10	50	8	47	8	50
합계	23	100	20	100	17	100	16	100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대한 결과는 각 세부항목별 중앙값을

통해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항목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실태	세부 항목	중앙값	적절성	항목별 중앙값 평균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	현 조직 구성형태	4	높음	2.4
	기존 협의회,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2	낮음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정도	2	낮음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	2	낮음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정도	2	낮음	2.7
	지역현안 및 이슈 반영 정도	2	낮음	
	의제 정보 공유 정도	2	낮음	
	자율적 운영 정도	4	높음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프로그램) 평가	회의형식에 대한 만족 정도	3	보통	3.0
	전반적인 운영 지원 프로그램 평가	4	높음	
	공동 캠페인 활동 평가	3	보통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 평가	3	보통	
	불법집회 공동대처활동에 대한 평가	2	낮음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 평가	4	높음	
치안인프라(CCTV) 확충에 대한 평가	2	낮음		

항목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적절성에 있어 낮게 나타난 항목들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즉, ‘기존 협의회,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의제 및 회의시 지역현안 및 이슈의 반영’, ‘의제 정보의 공유’,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8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다음 <표 3>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3>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상 문제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조직 운영 및 협력 측면	-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부족	- 지역치안협의회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
	-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미흡	- 전략적 홍보활동
	-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의 문제	-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 구축
의제 및 회의 운영 측면	-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의 문제	- 협력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지역현안 및 이슈 반영의 문제	- 정기적 포럼 구축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네트워크 조직화
	- 의제 정보 공유 미흡	- 의제 및 회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 지침 마련
활동(프로그램) 측면	- 회의형식의 다양성 부족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평가팀 마련
	- 공동 캠페인 활동상 문제점	- 활동평가 인증제도 도입
	-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의 문제	- 지역특성별 치안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과정 개발
	- 불법집회 공동대처의 문제	- 특별사법경찰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지역치안협의회 조직운영 및 협력측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 전략적 홍보활동,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 구축, 협력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의 치안행정협의회와 경찰발전위원회와 그 개념이 혼돈되고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역치안협의회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민관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관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한 호혜 평등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과 관련한 협의기구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즉,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한 각 지역별 출판·홍보 및 정보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역주민들과 시설 및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단순 정보지 수준의 ‘지역신문’을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여론을 이끌고 지역치안 문제 및 해결을 이슈화하는 대국민 홍보가 요청된다.

시민 및 관계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를 통하여 각 관계기관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요구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 관계기관간 공동대처 능력 향상 및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의제 및 활동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경찰청이 평등한 관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활동계획수립은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시민단체와,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지역의 치안문제 의제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은 그 지역의 실질적인 협력기관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 합리적 의제 제시 및 회의 운영 측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적 포럼 구축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네트워크 조직화, 의제 및 회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지침 마련,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평가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별 회의 이외 전국적 단위의 정기적인 ‘다기관 포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기관 포럼을 통해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전국적 단위의 협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는 의제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촉진화 함으로써 그 운영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치안협의회회의 궁극적 완성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내용이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평가팀을 구성하여 계획과 실천의 조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치안협의회회의 활동(프로그램)적 측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평가 인증제도 도입, 지역특성별 치안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과정의 개발, 시민단체의 활동상 역할의 확대’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회의 기초질서위반행위 합동 단속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사법처리 업무의 이중화, 시민단체의 경우 행사 권한의 한계,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질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치안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율, 범죄예방율, 지역사회주민의 만족도 등과 같은 표준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우수한 지역의 치안협의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치안협

의회회의 치안활동평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질서위반행위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치안활동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회의 조직구성원 중 시민단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합동 단속시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외부적으로는 전문의 길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경우 행사 권한의 한계와 사법처리 업무의 이중화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조직구성원에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지자체와 합동활동을 합동단속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면 지역치안협의회회의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의제 및 회의시 지역현안 및 이슈의 반영’, ‘의제 정보의 공유’,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운영의 적절성 수준이 보통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치안협의회회의 활성화 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회의 조직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회의 합리적 의제 제시 및 회의 운영, 활동(프로그램)상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PSI](#)

‘감히 경찰의 이름을 내걸고 로스쿨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경찰대학 경찰학과 로스쿨교수지원팀 경정 이 관 희

법조인으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지휘의 대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던 경찰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22개 로스쿨에 2014년 2학기 ‘경찰실무(Police Practice & Legal Issues)’ 강좌를 개설하고 9명의 경찰관을 로스쿨 겸임교수로 선발, 임용하였다. 아직 실행과 평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남긴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무것도 없는 출발) 2014년 2월,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된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었으며 완벽한 강의내용과 교수가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몇 개의 로스쿨에서 우리를 받아 줄지 예상할 수조차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강좌가 무용담 따위로 채워지는 특강이어서도 안 되고 이론 없이 실무적인 훈련에만 그쳐서도 안 되며 학문적인 깊이가 낮은 것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된다는 막연한 방향성뿐이었다.

(방향의 설정) 초기 조연자들은 경찰교육기관의 교육·훈련내용을 직관과 경험에 의해 조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자체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강좌를 로스쿨에 손가락 하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에 의한 교육설계라는 비난을 벗어나고자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Dick&Carey의 교수설계모형에 따라 <요구분석-직무과제분석-설계-개발-실행>의 순으로 체계적인 설계를 해보기로 하였다.

(거대한 장벽) 우선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위해 로스쿨 교수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강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자문은 고사하고 아래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경찰실무를 들을까요?”, “이 친구들은 오로지 변호사 시험에만 관심이 있어서 경찰실무에 관심을 들지 의문이네요.”, “경찰실무는 반드시 경찰관이 가르쳐야 하나요? 우리 교수들이 가르치면 되는데...”, “겸임교수가 고위직 공무원이면 좋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경우 평검사나 판사가 나오다가 학교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이제는 부장검사, 부장판사 급이 나오는데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느껴졌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교육목표의 발견) 이렇게 자문을 받으러 다니던 도중 어떤 로스쿨 교수로부터 “감히 경찰의 이름을 내걸고 로스쿨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다. 이 한마디가 마치 그간의 법조사회 문제와 뒤틀려진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법조사회가 가진 문제가 개인의 성향이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문을 기반으로 구축된 배타의 성에서 출발했구나 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뼈아픈 이 망언은 역설적으로 로스쿨에 경찰실무과목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다. 단순히 경찰을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의 눈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희망을 품다)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만 했기에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경찰채용 및 경찰실무과목에 관한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 자체에 불응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24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설문문에 응하였다. 학생들의 의견은 교수들과 사뭇 달랐다. 응답자의 57.5%가 수강을 원했으며 경찰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0.2%나 되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로스쿨에 배포하였다. 이를 믿지 못하고 자체 설문을 다시 한 로스쿨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당초와 상반된 설문결과를 통보해 온 곳은 없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우리는 학생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현직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등과 세미나를 통해 직무설계분석을 하였고 경찰대학 교수들로부터 받은 자문 등을 통해 교육내용을 설계하였다. 당초 범죄수사학 중심, 경찰학 중심, 경찰실무 소개 중심,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충, 변호사시험 적합성에 맞춘 강좌 등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범죄의 예방-제지-수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설계하였으며 경찰의 실무를 도입부에 소개하고 법리적용, 쟁점의 추출과 해석 및 개선안 도출로 이어가는 사례중심학습(PBL)방식을 강의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법률을 적용,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의 이해와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필수이며, 이처럼 경찰업무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구성취지였다.

(누가 가르쳐야 하나) 다음 과제는 이러한 경찰실무 강의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가르칠 교수의 선발과 양성이었다. 설계된 Syllabus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의 근간이 되는 법리와 과학적 지식 등에 대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1단계 심사에서는 논문 수준에 버금가는 강의안을 요구하여 연구능력을 가늠하였고, 2단계 시범강의에서는 강의전달력과 다른 분야에 대한 학습 잠재력을 증점적으로 보았다. 3단계 공동연구과정에서는 협업 및 학습능력을 테스트하였다. 최종 선발된 겸임교수들은 일련의 선발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좌시했던 분야가 많았다는 사실과 경찰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겸임교수들은 모집당시에도 경험과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과정 이후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면서 겸손해지거나, 그동안 업무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다뤘는지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을 통해 겸손은 개인적 품성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성공을 예감하다) 강좌설계와 병행하여 전국 25개 로스쿨을 순회하면서 경찰실무 과목과 변호사 경력직 특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설명회의 접근방향은 ‘마케팅’이었다. 우리 스스로 예비법조인들의 세속적인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답안을 구상하였고, 대학 교직원들 역시 “로펌 뒤에 설명회를 듣는 거라 많이 안 오면 죄송해서 어찌죠”,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라 많이 올지 모르겠는데요”라며 우리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사뭇 진지했고 질문도 세속적이지 않았다. “법만 아는 저희가 경찰을 할 수 있나요”, “경감이라는 계급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나이가 어린 저희가 경감이라는 계급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이 수업을 듣고 경찰이 되면 업무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가 질문의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순수함은 경찰실무 강좌가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가르치는 강좌와 차별화하여 경찰 철학을 제대로 전달하고, 경찰이 매순간 맞닥뜨리는 현장의 明暗을 생생히 전달하려는 당초 방향이 맞음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지난 7월 11일 로스쿨 학생대표들은 ‘전국 로스쿨에서 경찰실무과목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였고 6월말 19개교 개설 확정 이후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어 3개 학교에 추가로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와 관심은 이번 경찰실무 강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미래를 향한 반성) 한 학기 32시간의 교안을 만들고 교수를 선발·양성하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 교육전문가가 제공하는 교수설계모형을 토대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 대상 요구분석, 현직 변호사와 법률전문가 상담 이외에도 2013년 경찰청이 연구용역 발주하여 완성한 수사경찰관 직무분석 결과를 참조한 직무과제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왜 외부인인 로스쿨 재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만 이렇게 치밀한 교육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경찰동료를 위한 교육설계에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반성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 로스쿨 교수지원팀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등 조직 내외부로 이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강좌가 끝나면 경찰 전체를 조망해 본 겸임교수들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 밖으로는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를 알릴 기회를 계속 마련할 것이고, 안으로는 경찰관에게 특화된 새로운 강의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성공을 기대하며)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로

스쿨 재학생, 이를 가르치는 교수, 로스쿨을 바라보는 우리 조직의 시각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였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경찰실무과목 수강이 경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번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히 경찰의 이름을 내걸고 로스쿨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며 형사사법체제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각자의 몫을 함에 감사할 줄 아는 토양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PSI](#)



2014년 8월 25일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경찰비전과 지향가치〉

경찰 비전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 지향가치**
- 깨끗한 경찰
 - 유능한 경찰
 - 당당한 경찰

영국 맨체스터의 디자인을 이용한 범죄예방(Designing out Crime) 전략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경정 이명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013년 CPTED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신규 건축물 등에 대해 CPTED원칙의 적용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경찰 역시 범죄예방의 주관부서인 만큼 어느 부처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정부부처 중 최초로 관련이론을 소개하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며, 전국 각 경찰서에 이미 CPTED 담당자들을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CPTED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찰의 역량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서 CPTED 담당자들은 뭘,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자신을 전문가로 자부하는 직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계획·건축·디자인과 범죄예방이 만나는 접점에서 출발한 CPTED 전략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참여자의 조화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협력체계가 성숙되지 않았으며, 범죄예방의 전문가인 경찰이 CPTED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제도가 모델로 삼고 있

는 제도 중 하나인 영국의 ‘디자인을 활용한 범죄예방 (Designing out Crime)’정책, 그 중에서도 영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맨체스터 경찰의 전략과 활약상을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이다.

영국의 디자인을 활용한 범죄예방 정책은 영국 특유의 개발허가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정책을 ‘계획을 통한 범죄예방 (Planning out Crime)’ 정책으로 부르기도 한다. 개발허가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개별건축이나, 도시개발 등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의 의견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CPTED의 관점에서 개발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경찰이 개발허가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성과를 내며 영국경찰의 주요 범죄예방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규제철폐를 공약한 보수당 정권이 들어선 2010년 이후에는 관련예산과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경찰 담당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흔히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라고 불리는 담당 직원들은 주로 은퇴를 앞둔 경찰관이나, 은퇴한 경찰관으로 충원되는데, 비록 전문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건축이나 디자인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기계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과 관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모든 개발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검토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갈수록 그 편차가 커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참여가 거의 사라진 곳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개입시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경찰이 개발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서류가 지방정부에 제출된 이후에만 가능한데, 이때는 이미 디자인이나 계획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대폭적인 수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개발업자들이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맨체스터는 다른 영국도시에서 시도되지 않는 독창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째, 타 지역과는 달리 경찰관이 아닌 건축가 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전문 직원으로 채용하여 개발서류를 검토하게 한다. 범죄예방전문가가 건축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 건축전문가가 범죄예방기법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맨체스터의 경우 후자를 선택했고, 이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개발업자는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ALO와 상담하고, 경찰에서 발급한 범죄영향평가서(Crime Impact Statement)를 개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입하게 되어 '디자인을 이용한 범죄예방 전략'을 자연스럽게 도시 개발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영국과는 전혀 다른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영국식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CPTED는 대표적인 협력적 방법활동인 만큼 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충분히 구축된 이후에만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관련규정과 사업의 도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CPTED 전문 경찰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맨체스터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향후 경찰의 인력 선발, 교육,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PSI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연구소 하계 워크숍 개최

연구소는 7월 3일~4일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 디파크에서 상반기 연구결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연구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치안정책연구(제28권 제1호) 발간 및 배포
연구소는 7월 16일~22일까지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를 경찰청 및 지방청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 지향적 경찰 활동을 위한 범죄분석관에 관한 연구’ 등 9개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치안정책연구과제 응모 및 과제 선정

연구소는 7월 18일~28일 동안 정책기획/생활 안전/교통정책/범죄수사(‘4대 사회악’ 포함)등 치안분야 연구주제를 공모하였습니다. 응모된 연구주제 8건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주제 심사위원회」에서 주제의 중복성, 연구수행 여부 등의 심의를 통해 하반기 책임연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발간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모 기간:** 2014. 9. 1(월)~10. 1(수)
- ▶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 강사 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 ▶ **주제 분야:** 치안정책,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전, 교통, 안보대책, 재해·재난 등 경찰 및 범죄관련 분야

연구관 동정

-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7월 24일 경찰교육원 행정관직무교육과정과 8월 14일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7~8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81기 신입순경과정(피해자의 이해와 보호), 8월 29일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에서 ‘범죄학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7월 23일과 8월 27일에는 경찰청 용역과제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연구소 인사

- ◆ 7월 7일 정책기획연구실에 **고창경 총경**, 7월 17일 사회안전대책연구실에 **이명원 경정**, 8월 26일 안보대책연구실에 **박경흠 경감**이 경찰연구관으로 전입하였다.
- ◆ 7월 24일 정책기획연구실 **김지선 연구관**, 7월 31일 수사구조개혁연구실 **김현숙 연구관**이 퇴직하였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